

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(야생조류)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5일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

□ 적용기간 : 2023년 4월 6일부터 방역지역* 해제 시까지

* '23.4.1. 전남 나주 육용오리 AI 발생에 따라 설정된 방역지역

※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(검출)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

□ 적용범위 : (불임)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구간(전라남도 나주시)

이 공고는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